

China Non Tariff Barriers Issue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를 위한 요구사항' 지침 발표



중국 前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를 위한 요구사항 지침 발표

지난 2월 13일, 前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現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를 위한 요구사항' 지침을 발표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람이 섭취해본 적이 없는 건강기능식품(영양 보충제 제외)의 경우, 라벨에 '본 제품은 동물 실험 평가에 통과하였으며, 000의 건강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함. 여기서 동물 실험 평가 통과 문구는 반드시 식품의 건강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명시되어야 함

건강기능 종류(예시)	면역력 강화, 골밀도 증가, 육체적 피로 회복, 방사선 위험 보호, 간 손상 보호, 수면 개선 등
라벨 수정 요구 사항	라벨에 동물 실험 평가에 통과했다는 문구를 추가해야 함
라벨 예시	'이 제품은 동물 실험 평가에 통과하였으며, 면역력 강화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

- 기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수정 요구사항에 맞춰 라벨을 바꾸어야 하며 이는 2020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함. 사람의 제품 섭취 평가 제품과 사람의 제품 섭취 평가 및 동물 실험 평가 모두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기존 기능성 표시 규정을 따르면 됨. 한편, 건강기능식품이 다수의 건강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 종류가 다를 경우, 라벨에 각 건강기능별 평가 결과를 표시해야 함

China Non Tariff Barriers Issue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예를 들어, 한 식품에 면역력 강화, 피부 수분 개선, 성장 및 발달 개선의 3가지 건강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면 하기와 같이 라벨에 표시해야 함

- 保健功能“增强免疫力”, 仅经动物实验评价(건강기능 ‘면역력 강화’는 동물 실험 평가에 통과함)
- 保健功能“改善皮肤水份”, 仅经人群食用评价(건강기능 ‘피부 수분 개선’은 사람의 제품 섭취 평가에 통과함)
- 保健功能“改善生长发育”, 经动物实验及人群食用评价(건강기능 ‘성장 및 발달 개선’은 동물 실험 평가와 사람의 제품 섭취 평가 모두 통과함)

• 2021년 1월 1일부터 상기 요구사항에 따라 라벨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규정에 따를 것임

• 사람의 제품 섭취 평가 대상 식품의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 요구사항은 별도로 정할 예정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중국 규정 변동 사항에 예의 주시해야...

지난 3월, 중국은 대대적인 기관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현재도 업무 이관 등이 진행 중임. 건강기능식품 담당 기관의 변동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함. 그 후 중국 법, 규정 변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향후 도입될 수 있는 정책에 적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를 위한 요구사항 공표 내용,
http://samr.saic.gov.cn/xw/yw/wjfb/201804/t20180417_273799.html

출처

CIRS, The former 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announcement on the specification of health food functional claims and the interpretation of SAMR, 2018.04.20